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37
----------	------

2017년 11월 23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년 11월 8일, 이현찬 의원 (찬성자 9명)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17년 11월 23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현찬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시민안전파수꾼의 양성을 통해 초기대응교육 이수자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·관리할 필요 있음.

### 나. 주요골자

- 1) 시장에게 양성계획 및 초기대응교육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·관리토록 함. (안 제7조)

### 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사업을 통해 초기대응교육 이수자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양성계획 및 초기대응교육 수립을 위해 시장에게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·관리토록 하려는 것임.

[표 1]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평가) 매년 양성계획에 따른 시민안전 파수꾼 양성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양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7조(평가 및 통계의 작성·관리) ①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시장은 양성계획 및 초기대응교육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 자료를 작성·관리한다.</p>

- 동 사업을 서울시가 2015년부터 10만 시민안전파수꾼의 양성을 목표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60,668명이 초기대응교육을 이수한 상황([표2]참조)으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양성계획 및 초기대응교육 수립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, 그 외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
[표 2]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실적 ('17.9.30. 기준)

(단위: 명)

구 분	2015	2016	2017	합계
양성 목표	10,000	30,000	30,000	70,000
실제 양성	10,380	30,189	20,099	60,668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5. 토론요지 : 없 음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##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평가”를 “평가 및 통계의 작성·관리”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양성계획 및 초기대응교육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·관리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평가) 매년 양성계획에 따른 시민안전                      피수꾼 양성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                     그 결과를 차년도 양성계획에 반영하여야                     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7조(평가 및 통계의 작성·관리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시장은 양성계획 및 초기대응교육을                     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관                      련 통계자료를 작성·관리한다.</p>